

경희대학교 및 의료기관 구성원을 위한 청탁금지법 매뉴얼

경희대학교 감사행정원

1. 매뉴얼 작성 목적

- 본 매뉴얼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의 시행(2016.9.28. 시행예정)에 따라 그 주요 내용을 알리고 경희대학교 및 의료기관 구성원의 업무수행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발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해설집 내용 중 경희대학교 및 의료기관 구성원의 업무수행 상 연관성이 높은 부분을 발췌한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였음
- 청탁금지법은 ① 대가성·직무관련성이 없어도 형벌, 과태료 등으로 제재하며, ② 금품등과 결부되지 아니한 부정청탁행위 그 자체도 규제한다는 데 다른 법률과 구분되는 특징이 있음

2. 청탁금지법의 적용범위

가. 인적 적용범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 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2. “공직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 다. 제1호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 청탁금지법에 따라 학교법인과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이사장 이하 학교법인의 임직원, 총장 이하 대학 교직원, 대학 부속 의료기관 소속 교직원은 명시적으로 적용대상에 포함됨(정규직, 계약직, 비정규직 불문)
- 청탁금지법에서는 위와 같이 청탁금지법의 직접적인 수범자를 ‘공직자등’이라 표현하고 있는 바, 우리 대학의 상황에 맞게 아래에서는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경희대학교 및 의료기관 구성원을 통틀어 ‘구성원(들)’이라 지칭하겠음

나. 장소적 적용범위

- (속지주의) 청탁금지법은 대한민국영역 내에서 위반행위를 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

용됨

- (기국주의) 대한민국 영역 외에 있더라도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
- (속인주의)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위반행위를 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에 대해서도 적용됨

3.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금지되는 행위)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는 크게 부정청탁과 금품 등의 수수로 나눌 수 있음

가. 부정청탁의 금지

- 청탁금지법에서는 아래와 같은 행위를 부정한 청탁으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음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등 법령(조례·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2. 인가 또는 허가의 취소, 조세,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범칙금, 징계 등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감경·면제하도록 하는 행위
3.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4. 법령을 위반하여 각종 심의·의결·조정 위원회의 위원,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시험·선발 위원 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5.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6. 입찰·경매·개발·시험·특허·군사·과세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을 법령을 위반하여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7.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8.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배정·지원하거나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9.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하도록 하는 행위
10.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1. 징병검사,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평가 또는 판정하게 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3.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의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법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
14.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관하여 공직자등이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1) 부정청탁행위의 의미

- 부정청탁행위란 청탁금지법 상 열거된 14가지 대상직무와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또는 ‘지위·권한을 남용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를 뜻함. 다만, 공공기관의 재화·용역 관련 직무는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나’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를 뜻함
- 부정청탁행위의 당사자는 부정청탁을 하는 자(부정청탁행위의 주체)와 부정청탁을 받는 자(부정청탁행위의 상대방)로 나눌 수 있음
- 부정청탁을 받은 구성원들이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부정청탁을 한 자는 제재대상에 해당함(즉, 부정청탁 내용의 실현 여부와 무관함)

2) 부정청탁행위의 주체

- '누구든지' 부정청탁을 하여서는 아니됨
- 법인 소속 임직원이 업무에 관하여 실제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인은 법 제24조(양벌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됨

3) 부정청탁행위의 상대방

- 법에 열거된 14가지 대상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부정청탁의 상대방이 됨
- 지휘감독권이 있는 상급자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 위임전결규정 등에 따라 직접 결재선상에 있지 않더라도 하급자에게 지시 등을 통해 사무를 처리하였다면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으로 인정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됨
- 지휘감독권은 없으나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부정청탁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전달한 경우,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
- 부정청탁의 상대방(부정청탁을 받은 사람)은 최초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 거절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신고하여야 함
-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징계처분 대상에 해당하게 됨

4) 부정청탁의 방법

-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하는 것이 금지됨
- 제3자를 통하거나 제3자(가족 포함)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경우에는 법 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
- 직접 자신을 위하여 하는 부정청탁(부정청탁행위에 따른 법적 효과가 직접 청탁행위자 자신에게 귀속되는 경우)은 법 상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는 제외되나, 소속기관의 인사규정 등에 따라 징계처분 대상에 해당할 수 있음

5) 부정청탁의 성립요건

- '법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토록 하는 경우에 부정청탁이 성립함
- '법률,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부령' 뿐만 아니라, 상위법령에 따라 그 구체적인 기준을 고시, 훈령 등에서 정한 경우 그 고시나 훈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도 포함됨
- 재화·용역 관련 부정청탁행위는 다른 부정청탁행위와는 달리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나게 한 경우 부정청탁이 성립토록 하고 있어 그 범위가 다른 부정청탁행위보다 넓은
-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란 부정청탁이 없었다면 이루어졌을 통상적인 거래조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 없이 기관의 내부 기준, 사규 등을 위반하여 특정인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경우 등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난 행위에 해당함

6) 부정청탁의 예외사유

- 아래 열거된 예외사유에 해당할 경우(정당한 청탁행위)에는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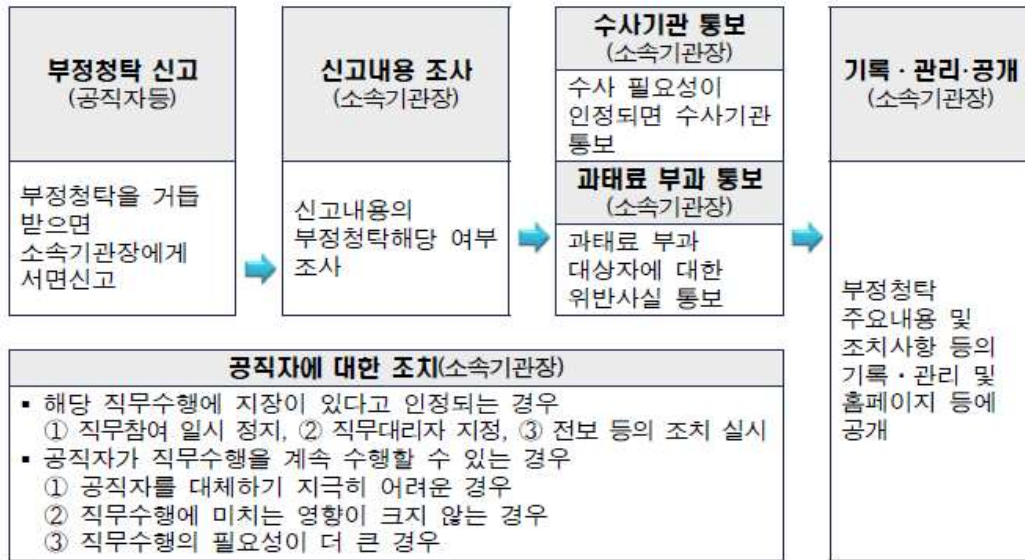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청원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국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기준(제2조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공공기관의 규정·사규·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해결을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된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를 제안·건의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2.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3.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사업·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행위
4.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문의 등을 하는 행위
5.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을 신청·요구하는 행위
6.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제도·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7.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7)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 부정청탁을 받아 직무를 수행한 사람(해당 업무 직접처리자, 결재선상에 있는 자, 지휘감독권이 있는 자 모두)은 형사처벌 대상이 됨
- 상급자가 부정청탁을 받고 하급자에게 지시한 경우, 하급자는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하며,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임을 알면서 지시에 따른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됨
- 직접 자신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자는 원칙적으로 제재대상에서 제외되나, 직접 자신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자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의무적 징계대상이 됨(법 제 21조)
- 부정청탁을 받은 하급 구성원이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사실을 결재권자가 전혀 알지 못한 경우에 결재권자는 형사처벌 불가

8)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의 처리절차



- ‘최초’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그것이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하며,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할 의무가 발생함
- ‘동일한 부정청탁’의 여부는 부정청탁을 받은 구성원을 기준으로 부정청탁 내용의 본질적 동일성 여부로 판단함. 즉, 부정청탁의 주체, 방법 등이 다르다 하더라도 그 실질적 내용이 동일하다면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동일한 부정청탁에 해당함
 예시) 이해관계자가 동일한 내용으로 부정청탁을 직접 1회 한 후 제3자를 통하여 1회 한 경우, 그 부정청탁을 받은 자의 입장에서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부정청탁이므로 신고의무가 발생함
- 신고방법은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하여야 하며, 신고사항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 부정청탁을 한 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취지·이유 및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신고는 소속기관 뿐만 아니라 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가능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보호·보상 대상에서 제외되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형법상 무고죄 성립

9)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조치

- 구성원이 청탁금지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필요적으로 징계처분을 하여야 함
- 소속기관의 장은 과태료 관할법원에 위반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관할법원이 재판(결정)을 통하여 과태료를 부과함

구성요건		제재 수준
행위 주체	유형	
이해당사자	직접 자신을 위하여 부정청탁하는 경우	제재 없음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사인(私人)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하는 경우	2천만원 이하 과태료
공직자등 (구성원)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하는 경우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 수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나. 금품 등 수수의 금지

청탁금지법에서는 금품 등 수수의 금지를 다음과 같이 규정함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④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제재대상(수수 금지 금품 등)

-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초과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됨
- '동일인' 과 '1회'의 개념은 문언 상 엄격하게 한정되지 않고, 금품 등의 실제 제공자가 동일하거나 시간적 계속성 상 1회로 평가 가능할 경우 넓게 인정될 수 있음
-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 금품 등을 수수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며, 그 금액에 관계없이 임무에 위반하는 행위로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면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함
- '금품등'이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편의 제공 및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함(취업제공, 성매매, 장학생 선발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 등도 포함)

2) 금지되는 행위

- (수령자의 경우) 청탁금지법은 구성원들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금지함
- (제공자의 경우) 청탁금지법은 누구든지 구성원들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

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금지함

- 구성원의 배우자는 구성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금지함
- 구성원은 배우자가 구성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은 사실을 안 경우 신고 의무가 발생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됨

3)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예외사유

아래 열거된 예외사유에 해당할 경우(정당한 수수행위)에는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음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 현 시행령 제정안에 따를 경우, 법 제8조제3항제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한

- 도액)은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임
- 음식물과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그 가액은 합산하며 이 경우의 가액은 5만원임
- 경조사 시 부조금을 선물·음식물 등과 함께 수수한 경우 그 가액은 합산하며 이 경우의 가액은 10만원임
- 3만원 이하의 금품 등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을 벗어나서 수수한 경우에는 수수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임

4)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

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 구성원은 자신이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으로 신고하여야 함
- 신고사항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취지·이유, 제공자의 인적사항·금품 등의 종류와 가액, 반환 여부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신고는 소속기관 뿐만 아니라 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가능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보호·보상 대상에서 제외되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형법상 무고죄가 성립함

나) 수수 금지 금품 등의 반환·인도

- 자신이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지체 없이 반환·인도해야 함
- 자신의 배우자가 금품 등을 수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금품 등을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도록 해야 함
- 단, 받은 금품 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제공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그 밖에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인도해야 함
- 구성원이 '지체 없이' 신고하거나 반환 또는 인도하면 제재대상에서 제외되며, 자진신고 하였으나 지체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제재를 감면받을 수 있음

5)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가) 외부강의 등의 범위

-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 제한대상이 됨
- 직무와 관련없는 외부강의,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거나 회의 형태가 아닌 외부강의 등은 법 제10조의 규율대상이 아님(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자문의 대가는 일반적인 금품 수수 조항(법 제8조)으로 규율함)
- 현 시행령 제정안에 따르면 외부강의료의 상한액은 시간당 100만원(단, 공무와 관련된 경우에는 1회 100만원)임
-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 없이 외부강의 등 사례금 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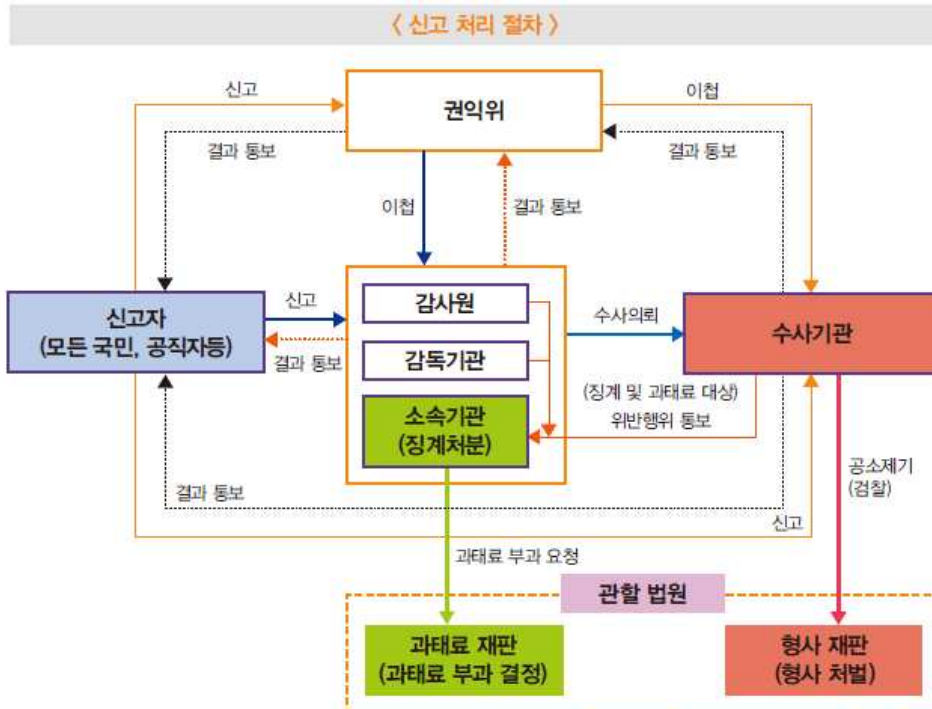
공자가 외부강의 등과 관련하여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하고, 실비로 제공되는 교통비는 제외함

나) 외부강의 등의 신고의무

- 외부강의를 할 경우, 대가 수령 여부를 불문하고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함(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신고)
- 소속기관장은 신고한 외부강의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한 가능
- 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외부강의는 신고 불요(단, 소속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신고의무 발생 가능. 경희대학교 전임교원은 「전임교원 대외기관 겸직 및 출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신고의무 발생)
- 초과사례금을 받은 경우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고 반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며, 신고 및 반환 조치를 하지 아니할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

4. 신고 및 처리 절차

가. 신고 및 처리 절차 체계도



나. 신고자 등의 보호·보상

- 청탁금지법 상 신고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주체가 '누구든지' 하는 신고와 법

- 제7조제2항,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직자등(구성원)’의 자진신고로 구분됨
- 신고주체가 ‘누구든지’ 이면 ‘공직자등(구성원)’이건 상관없이 이 법에 따른 신고는 모두 보호의 대상에 해당함
 - 신고자 보호조치로는 ① 비밀보장 및 신변보호조치, ② 불이익조치의 금지, ③ 신고의 방해취소 강요 금지, ④ 불이익조치의 원상회복조치, ⑤ 신고와 관련한 범죄행위의 책임감면 조치 등이 있음
 - 포상금·보상금 지급 대상은 법 제15조제5항·제6항에서 제13조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신고한 경우로 규정
 - 신고로 인하여 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 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5. 기관의 의무

가. 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 구성원의 직무수행 중 또는 직무수행 후 법 위반사실을 발견한 경우 해당 직무의 중지·취소 등 필요한 조치 실시
- 위법한 직무처리로 인해 직무의 상대방에게 지출·교부된 금액 또는 물건이나 그 밖에 재산상 이익 환수
- 위반행위의 유형, 비위정도, 과실의 경중, 그 밖의 정상을 고려한 세부적인 징계기준을 마련하여 징계기준에 따른 징계처분 진행
- 과태료 대상이나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할 경우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 요청을 하거나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나. 교육과 홍보

-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을 구성원들에게 정기적으로 교육 실시
- 구성원들에게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 준수를 약속하는 서약서 수령

다.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 청탁방지담당관은 ①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 교육 및 상담 수행, ② 신고·신청의 접수, 처리 및 내용의 조사, 소속기관장의 위반행위 발견 시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통보 업무 수행

6. 사례별 Q/A

[사례 1 - 채용 관련 부정청탁]
 교직원 B의 자녀 A가 대학에서 실시하는 채용시험에 응시하였음. 교직원 B가 자녀 몰래 면접위원인 인사팀장 C에게 면접시험 점수를 높게 주어 합격시켜 달라는 청탁을 하였고,

면접위원으로 참석한 인사팀장 C가 면접시험 점수를 높게 주어 자녀 A가 합격한 경우

- 공직자 등의 인사 관련 직무는 청탁금지법 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
- 법을 위반하여 인사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
- 교직원 B는 자녀 A의 부탁이 없었지만 제3자 A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고 공직자등에 해당하여 제재가 가중되므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
- 인사팀장 C는 교직원 B의 부정청탁에 따라 면접 점수를 높게 주어 B의 자녀 A를 채용하였으므로 형사처벌 대상(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자녀 A는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제재대상이 아님

[사례 2 - 성적 관련 부정청탁]

졸업예정자인 학생A가 졸업을 유예할 목적으로 수강신청 기간 내에 졸업논문 수강신청을 하지 않았다가 학기 중 취업이 되자 담당 교수 B에게 졸업논문 수강 및 통과처리를 해 줄 것을 부탁하여 담당 교수 B가 졸업논문 통과처리를 해 준 경우

- 학교 성적 관련 직무는 청탁금지법 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
- 성적을 조작하는 것은 형법 상 업무방해죄에 해당
- 담당 교수 B는 학생 A의 부정청탁에 따라 A의 성적을 조작하였으므로 형사처벌 대상(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학생 A는 직접 자신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이므로 제재대상이 아님

[사례 3 - 원무 관련 부정청탁]

A는 대학병원에 입원을 하기 위해 접수를 하려고 하였으나 접수순서가 너무 밀려 있어 자신의 친구이자 해당 병원 원무과장 C의 친구 B를 통해 먼저 입원을 할 수 있도록 부탁하였고, 원무과장 C는 접수순서를 변경하여 대기자 A가 먼저 입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경우

- 대학병원의 입원 관련 직무는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용역이므로 청탁금지법 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
- 공공기관의 내부 기준, 사규 등을 위반하여 특정인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부정청탁에 해당(입원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접수 순서대로 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관행)
- 대기자 A는 제3자인 친구 B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

- 친구 B는 제3자인 대기자 A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
- 월무과장 C는 B의 부정청탁에 따라 접수순서를 변경하여 해당 병원에 대기자 A가 우선하여 입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형사처벌 대상(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사례 4 - 금품 수수에 있어 동일인 및 횡수 기준]
 교직원 A가 B건설회사의 설계가 심의대상으로 상정된 OO대학관 건설사업 심사위원으로 지정되었음. 심사위원 A에게 B건설회사의 임원 C는 70만원 상당의 양주를, 직원 D는 3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각각 제공하였고, 직원 E는 3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접대한 경우

- 교직원 A는 B건설회사의 임직원 C, D, E로부터 금품 등을 받았으나, 금품 등의 출처 및 실제 제공자는 B건설회사임. 따라서, A는 B건설회사로부터 130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받은 것으로 평가됨
- 교직원 A가 C, D, E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행위는 시간적 계속성과 심의대상 처리라는 목적의 관련성이 있어 1회로 평가 가능
- 교직원 A는 B건설회사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았으므로 형사처벌 대상(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임직원 C, D, E는 A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각각 제공하였으므로 모두 각자 제공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

[사례 5 - 화환과 부의금 제공의 한도액]
 기업대표 A가 교직원 B의 부친상에 화환과 부의금을 함께 제공한 경우

-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화환, 부조금은 할 수 있음
-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부조의 목적으로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를 줄 수 있음. 단, 화환과 부의금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합산하여 1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사례 6 - 식사 제공 등 한도액의 예외사유]
 대학병원 의사 A가 민간병원 의사 B 등과 함께 학술 포럼 만찬에 참석하였는데 식사 메뉴로 5만원 짜리 스테이크 정식이 나왔을 때, 이를 거절하고 3만원 이하의 메뉴를 요청해야 하는지 여부

- 학술 포럼 만찬이 법 제8조제3항제6호의 예외사유(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격을 차별하지 않아도 됨

[별첨 - 청탁금지법 상 벌칙 조항]

유형	위반행위	제재수준	
부정청탁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직자등에게 직접 자신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이해 당사자 	제재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직자등에게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 	1천만원 이하 과태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자 	공직자등을 제외한 일반인	2천만원 이하 과태료
		공직자등	3천만원 이하 과태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금품등 수수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 -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 또는 반환(인도)하지 않은 공직자등 - 금품등을 공직자등이나 그 배우자에게 제공한 자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몰수·추징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 -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 또는 반환(인도)하지 않은 공직자등 - 금품등을 공직자등이나 그 배우자에게 제공한 자 	수수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부강의등 초과사례금을 수수 후 신고 및 반환을 하지 아니한 공직자등 	500만원 이하 과태료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위반행위의 신고 및 조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공직자등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고자등에게 신고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 제6호2) 가목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를 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확정된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신고자등에게 신고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 제6호나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를 한 자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원회가 보호조치의 신청에 대한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련 자료 제출, 출석, 진술서의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자 	3천만원 이하 과태료	